

#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 : 김석규 의원)

의안 번호	63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22.

발의자 : 김석규, 최선호, 정숙남,  
이기준, 김지원, 신재향  
의원(6명)

## 1. 제안이유

「경상남도 시·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」 개정(2026.4.30.)에 따른 양산시의회 의원 정수 증원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, 상임위원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규정의 적용 제외를 명확히 하여 원활한 원 구성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양산시의회 의원 정수 증원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각각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함(안 제2조)
- 상임위원장 선거 시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(안 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-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제71조

양산시의회 조례 제 호

##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“9명”을 각각 “10명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상임위원”을 “소속 상임위원”으로 하고, “의장선거의”를 “의장·부의장 선거의”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기획행정위원회 : <u>9명</u> 이내</p> <p>3. 도시건설위원회 : <u>9명</u> 이내</p> <p>제6조(상임위원장) ① (생략)</p> <p>② 상임위원장은 <u>상임위원</u> 중에서 <u>의장선거의</u>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</p>	<p>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10명</u> --</p> <p>3. ----- <u>10명</u> --</p> <p>제6조(상임위원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상임위원장은 <u>소속 상임위원</u> 중에서 <u>의장·부의장 선거의</u>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 다만,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【지방자치법】

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71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【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】

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 : 5명 이내
2. 기획행정위원회 : 9명 이내
3. 도시건설위원회 : 9명 이내

제6조(상임위원장)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(이하 “상임위원장”이라 한다) 1인을 둔다.

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